

의안번호	2217996
의 퇴 인	부승찬의원
회 답 일	2026.10.16.
추 계 번호	26D1845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 (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0조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신설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로 지정된 군수품에 대한 수급 현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소재·부품 조달방안 및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지원 등을 포함하여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2	안 제30조의2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방위사업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방기술품질원에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음(제1항)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및 관련 연구의 수행에 드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3	안 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전용기기 또는 물품을 방산업체·전문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업체에 대해서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음	의무규정
4	안 제55조 (원자재의 비축)	방위사업청장은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위하여 비축 목표에 관한 사항, 비축품목의 종류·물량에 관한 사항, 정부가 취득 또는 비축하여야 하는 품목과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가 취득 또는 비축하여야 하는 품목에 관한 사항,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위산업 공급망 안정화 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비축 필요 사항,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포함하여 원자재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방위사업청장과 방산업체는 제1항의 비축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원자재를 비축하여야 함. 다만, 방위사업청장은 비축계획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업체로 하여금 원자재를 비축하도록 할 수 있음(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자재의 비축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근거규정		
1	안 제30조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안정화) 신설	• 미대상 - 기 수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2025년부터 국방기술품질원 공급망관리연구실에서 공급망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급망 안정화 계획도 같이 진행할 예정 (단위: 백만원)		
2	안 제30조의2 (무기체계 및 방산물자 공급망 조사·분석)			
		현행 사업명	2025	2026
		무기체계 공급망 관리	748	5,249
		- 방산물자 부품 공급망 연례 조사분석	547	1,163
3	안 제45조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대부 등)	• 미대상 - 기 수행 중인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관리 중인 비축물자에 대해 방산업체에 무상대부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세입차감요인은 없음		
4	안 제55조 (원자재의 비축)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사유

□ 방위사업청의 비축사업 현황

- 1970년대 율곡사업의 일환으로 방산물자 원자재 비축사업으로 구매한 원자재의 무상대여 등 순환사용 등을 통해 현재 43종 430억원 규모의 원자재를 비축한 상황
- 2026년부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을 근거로 신규로 비축사업을 시작함
 - 2026년 소재·부품 비축 원자재관리 사업에 9억원의 예산(인건비 등 1.5억원, 비축 필요 원자재 자산취득 7.5억원)을 편성하여, 수급애로가 예상되는 원자재에 대한 비축소요 발굴, 기존 비축원자재 및 확대된 대체비축 원자재에 대한 품질점검, 니트로구아니딘 등 7개 품목 등 경제안보품목 및 신규비축 필요 원자재 비축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원자재 비축 사업 확대(안 제55조)

- 개정안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방산물자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에 대해 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원자재 비축사업을 확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비축할 원자재의 종류 및 물량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 부재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 참고로, 방위사업청은 2026년 11개 무기체계 공급망 조사분석을 통해 303억원, 방산업체 조사를 통해 30억원의 비축수요를 파악하였다고 설명
 - 무기공급망 조사분석을 통한 비축수요: 원자재 34종(알루미늄, 철강, 니켈, 복합재 등), 구성품 95종(회로카드 조립체, 센서·신호처리장치류, 케이블·커넥터류, RF 증폭기 등)
 - 방산업체 조사를 통한 비축수요: 메탈 저마늄, 텅스텐 파우더, 천마 수리부속, L-SAM용 기폭장치, 위치자세제어장치 부품 등 장납기(18개월 이상) 품목

Ⅲ.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전수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전수연	02-6788-4667	syjeon@assembly.go.kr